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하여 법조항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위반(법 제14조 제1항)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연명부					
순번	소속	직책	성명	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장기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의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속 :
성명 :

위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직영인원 이 외에는 "당해 작업"이란 한정으로 관리는 가능하지 않는 불합의 안전인원으로 보아야하며 본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의 안전을 책임질수있고 및 불응중단의 권한과 그 책임수행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에 대해 (내부) 통보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내 점검관리 및 통보제출의 책임과감
5.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안전인원)인원지정, 관리감독자의 위임에 의하여 안전인원의 업무에 안전관리(내부)인원에 위임한 사업장은 그 내외(내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안전인원으로 표시되므로 이를 구별 할수없고 안전인원으로 업무를 위임(내부)인원에 위임한 사업장은 그 내외(내부)의 업무수행에 위임(내부)의 표시(조치)에 따른 한다.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성에 관한 사업장내외 노동부(청)인원 및하는 사항

년 월 일

0 0 0 0

가. 위반행위

- (1)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조치기준

00작업 안전담당자 연명부

순번	소속	직책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기인물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의 안전담당자로 자동됩니다.

년 월 일

0 0 0 0

00작업 안전담당자 지정서

소속 :
성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00작업 안전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담당자 업무]

1.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2.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3.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감사
4. 기타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년 월 일

0 0 0 0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단,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항은 500만원(과태료), (2)항은 300만원(과태료)

라. 관계서류 : 관리감독자 연명부 및 지정서, 안전담당자 연명부 및 지정서

◀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 제1항, 법 제16조 제1항)** ▶

-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

(1)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① 미선임기간 2월 이상

②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① 미선임기간 2월 이상

② 미선임기간 2월 미만

나. 조치기준

(1)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미선임 기간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2)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미선임 기간동안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보건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의 ①은 500만원(과태료), ②는 300만원(과태료), (2)의 ①은 500만원(과태료), ②는 30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법 제15조 제3항, 법 제16조 제3항)** ▶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허가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가. 위반사항

- (1) 안전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 (2) 보건관리자 증원·개임 명령위반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항은 500만원(과태료), (2)항은 30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사항

(1) 산업보건의를 미선임한 경우

- ① 미선임기간 2월 이상
- ② 미선임기간 2월 미만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2)항 모두 50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 제1항) ▶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위반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① 미지정기간 2월 이상
- ② 미지정기간 2월 미만

나.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항은 200만원(과태료), (2)항은 10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에 관한 서류 

(자료제공 :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

